

「구미시 작은도서관 설치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
전부개정조례안」

# 심사보고서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6년 4월 7일

나. 제출자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: 2026년 4월 8일

라. 상정일자: 2026년 4월 16일

제29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## 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시립중앙도서관장 류 정 속

### 나. 제안이유

- 사립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 체계를 명확히 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### 다. 주요내용

- 1) 목적,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3조)
- 2) 기능, 위치, 접근성, 시설 및 자료기준에 관한 사항(안 제4조~제6조)
- 3) 등록, 폐관 및 운영 인력에 관한 사항(안 제7조, 제8조, 제11조)

## 라. 참고사항

- 1) 관계법령: 「도서관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·시행규칙,  
「작은도서관 진흥법」, 「건축법 시행령」
- 2)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3) 합 의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와 합의되었음

## 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장 창 곤

### ○ 본 조례안은

-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립 작은도서관의 설치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기준을 재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### ○ 검토 결과,

-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운영기준 및 제도적 지원 근거가 확립되어 시민들의 생활 밀착형 독서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사립 작은도서관의 특성상 초기 등록 이후 자생력 부족이나 전담 인력 부재 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운영이 부실해지거나 유명무실하게 방치될 우려가 있음.
- 따라서 도서구입비 등 예산 지원에만 그치지 않고, 정기적인 실태 점검 등으로 작은도서관이 정보제공 및 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- 또한, 시민들이 작은도서관의 위치나 운영시간 등 이용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여, 시민 이용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